

2018년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과천시장

201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 4. 22. ~ 5. 11.(20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고금란(과천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노영기(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정현(세무사)

과천시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 | | |
|---|-----------------|----|
| ① | 검사의견서 | 1 |
| ② | 결산검사 총괄 현황 | |
| | 1. 과천시 재정 현황 | 2 |
| | 2. 세입.세출 결산 | 3 |
| | 3. 기금의 결산 | 15 |
| | 4. 재무제표의 결산 | 16 |
| | 5. 성과보고서 | 18 |
|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9 |
| ③ | 개선 및 권고사항 | 21 |
| ④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7 |

1 결산검사 의견서

과 천 시 장 귀 하

2019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로부터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과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과천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과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고 금 란



검사위원 노 영 기



검사위원 박 정 현



2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 |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총 | 계 | 세입(수입) | 473,657 | 523,542 | 627,949 |
| | | 세출(지출) | 238,061 | 207,970 | 226,101 |
| | | 결산상잉여금 | 235,596 | 315,572 | 401,848 |
| 일반회계 | | 세입 | 288,035 | 326,264 | 355,316 |
| | | 세출 | 220,504 | 190,127 | 209,407 |
| | | 결산상잉여금 | 67,531 | 136,137 | 145,909 |
| 특별회계 | | 세입 | 24,062 | 28,361 | 102,288 |
| | | 세출 | 13,839 | 15,537 | 14,096 |
| | | 결산상잉여금 | 10,223 | 12,824 | 88,192 |
| 기금 | | 세입 | 161,560 | 168,917 | 170,345 |
| | | 세출 | 3,718 | 2,306 | 2,598 |
| | | 결산상잉여금 | 157,842 | 166,611 | 167,747 |

기금을 포함한 20개 전체 회계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과천시 재정 규모는 627,949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04,40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 규모'는 3,602천원, 지방세 실제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1,166천원 임.

결산상 잉여금 401,848백만원은 일반회계 결산잉여금 145,909백만원,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88,192백만원, 기금의 결산잉여금 167,747백만원의 합계액 임.

일반회계의 결산잉여금 내역은 이월금 43,76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89백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99,260백만원 임.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A) | 세출결산액 (B) | 결산상 잉여금 (C=A-B) |
|-----------|---------|--------------|--------------|--------------------|
| 합 계 | 442,001 | 457,604 | 223,503 | 234,101 |
| 일 반 회 계 | 340,096 | 355,316 | 209,407 | 145,909 |
| 특 별 회 계 | 101,905 | 102,288 | 14,096 | 88,192 |
| 공기업특별회계 | 98,351 | 96,297 | 11,382 | 84,915 |
| 상 수 도 | 15,155 | 13,564 | 6,270 | 7,295 |
| 하 수 도 | 12,318 | 11,827 | 4,735 | 7,091 |
| 지식정보타운 | 70,878 | 70,906 | 377 | 70,529 |
| 기타특별회계 | 3,554 | 5,991 | 2,714 | 3,277 |
| 저 소 득 | 467 | 515 | 63 | 452 |
| 의 료 보 호 | 353 | 353 | 344 | 9 |
| 도 시 주 차 장 | 2,734 | 5,123 | 2,307 | 2,816 |

| 회 계 별 | 현년도 재무상환 | 이 월 액 (D) | | | | |
|-----------|-------------|-----------|-------|--------|---------|---------|
| | | 명시 | 사고 | 계속비 | 보 조 납 금 | 순 세 계 금 |
| 합 계 | - | 28,891 | 5,381 | 13,512 | 2,890 | 183,427 |
| 일 반 회 계 | - | 24,884 | 5,364 | 13,512 | 2,889 | 99,260 |
| 특 별 회 계 | - | 4,007 | 17 | - | 1 | 84,167 |
| 공기업특별회계 | - | 3,928 | 17 | - | - | 80,970 |
| 상 수 도 | - | 1,638 | 9 | - | - | 5,648 |
| 하 수 도 | - | 2,290 | - | - | - | 4,801 |
| 지식정보타운 | - | - | 8 | - | - | 70,521 |
| 기타특별회계 | - | 79 | - | - | 1 | 3,197 |
| 저 소 득 | - | - | - | - | - | 452 |
| 의 료 보 호 | - | - | - | - | 1 | 8 |
| 도 시 주 차 장 | - | 79 | - | - | - | 2,737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7,60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42,001백만원보다 15,603백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0.6%인 223,50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34,101백만원 임.

이 중 명시이월액 28,891백만원, 사고이월액 5,381백만원 및 계속비이월액 13,512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9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427백만원 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결 산 액 | 340,096 | 365,617 | 355,317 | 1,788 | 8,512 |
| 결 산 확 인 액 | 340,096 | 365,617 | 355,317 | 1,788 | 8,512 |
| 차 액 | - | - | -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은 355,31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5%로서 15,221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 수 납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355,316,504,754 | 355,316,504,754 | - |

금고출납계산서와 수납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2 0 1 8 | 340,096 | 365,617 | 355,317 | 1,788 | 8,512 |
| 2 0 1 7 | 313,335 | 336,518 | 326,264 | 827 | 9,427 |
| 증 감 | 26,761 | 29,099 | 29,053 | 961 | △915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17년과 비슷한 97.2%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8.9% 증가(29,053백만원)로 355,317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불납결손액의 경우 전년도 827백만원보다 961백만원이 증가한 1,788백만원으로 주된 결손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566백만원, 배분금액 부족 452백만원, 평가액 부족 367백만원, 행방불명 291백만원 등 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340,096 | 365,617 | 355,317 | 1,788 | 8,512 |
| 지 방 세 | 66,623 | 74,443 | 67,782 | 1,765 | 4,896 |
| 세 외 수 입 | 24,303 | 34,597 | 30,958 | 23 | 3,616 |
| 지 방 교 부 세 | 26,945 | 30,218 | 30,218 | - | - |
| 조정교부금등 | 51,287 | 54,313 | 54,313 | - | - |
| 보 조 금 | 34,794 | 35,902 | 35,902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 부 거 래 | 136,144 | 136,144 | 136,144 | - | - |

과목별로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9.1%인 67,782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8.7%인 30,958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8.5%인 30,218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5.3%인 54,313백만원, 보조금은 10.1%인 35,902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결 산 액 | 310,333 | 340,096 | 209,407 | 43,760 | 86,929 |
| 결 산 확 인 액 | 310,333 | 340,096 | 209,407 | 43,760 | 86,929 |
| 차 액 | - | - | - | - | - |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예산액은 310,333백만원이며 전년도에서 29,763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340,096백만원 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6%인 209,407백만원임.

이월액은 43,760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경우 '체육시설 조성' 등 60건 24,884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공용주택 관리' 등 16건 5,364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시립요양원 건립' 등 6건 13,512백만원 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6%인 86,929백만원이며, 주요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17,748백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2,889백만원, 예비비 66,292백만원 등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 지 출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209,407,265,424 | 209,407,265,424 | - |

금고출납계산서와 지출액은 일치함.

○ 이용·전용 및 이체

예산의 이용은 해당 내역이 없으며,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총 4건으로 57백만원, 조직 내 부문별 세부사업 전용액은 총 36건, 197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지출

인건비 지출액은 38,727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지출액은 18,908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용은 112,024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34,774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415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1,559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909백만원으로, 이월사업비 43,760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2,88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9,260백만원으로 결산 됨.

순세계잉여금 99,260백만원은 세입초과금 15,221백만원과 집행잔액 84,039백만원의 합 임.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7년 지출액 | 2018년 | | | | 전년대비현황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비율 | 집행율 | 증감액 | 증감률 |
| 합 계 | 190,127 | 340,096 | 209,407 | 100.0% | 61.6% | 19,280 | 110.1% |
| 일반공공행정 | 33,003 | 43,178 | 36,804 | 17.6% | 85.2% | 3,801 | 111.5% |
| 공공질서및안전 | 1,661 | 3,069 | 1,144 | 0.5% | 37.3% | -517 | 68.9% |
| 교육 | 5,897 | 7,815 | 6,745 | 3.2% | 86.3% | 848 | 114.4% |
| 문화 및 관광 | 13,194 | 20,213 | 13,020 | 6.2% | 64.4% | -174 | 98.7% |
| 환경 보호 | 10,105 | 15,788 | 13,957 | 6.7% | 88.4% | 3,852 | 138.1% |
| 사회 복지 | 49,629 | 59,571 | 54,024 | 25.8% | 90.7% | 4,395 | 108.9% |
| 보건 | 2,958 | 4,654 | 3,735 | 1.8% | 80.3% | 777 | 126.3% |
| 농림해양수산 | 3,931 | 5,532 | 3,845 | 1.8% | 69.5% | -86 | 97.8% |
| 산업·중소기업 | 1,392 | 3,275 | 1,443 | 0.7% | 44.1% | 51 | 103.7% |
| 수송 및 교통 | 13,542 | 38,565 | 20,079 | 9.6% | 52.1% | 6,537 | 148.3% |
| 국토및지역개발 | 11,203 | 23,393 | 7,919 | 3.8% | 33.9% | -3,284 | 70.7% |
| 예 비 비 | - | 66,292 | - | - | - | - | - |
| 기 타 | 43,613 | 48,751 | 46,693 | 22.3% | 95.8% | 3,081 | 107.1%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중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4,024백만원 (25.8%), 일반공공행정 36,804백만원(17.6%)등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부문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20,079백만원(148.3%)이고 감소율이 두드러진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1,144백만원(68.9%)임.

(3) 특별회계 (직영 공기업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101,905 | 104,452 | 102,288 | - | 2,164 |
| 공 기업 특별회계 | 98,351 | 96,388 | 96,297 | - | 91 |
| 상 수 도 | 15,155 | 13,609 | 13,564 | - | 45 |
| 하 수 도 | 12,318 | 11,873 | 11,827 | - | 46 |
| 지식정보타운 | 70,878 | 70,906 | 70,906 | -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3,554 | 8,064 | 5,991 | - | 2,073 |
| 저소득주민생활 안 정 자 금 | 467 | 654 | 515 | - | 139 |
| 의 료 급 여 기 금 | 353 | 353 | 353 | - | - |
| 도 시 주 차 장 | 2,734 | 7,057 | 5,123 | - | 1,934 |
| 결 산 확 인 액 | 101,905 | 104,452 | 102,288 | - | 2,164 |
| 차 액 | - | - | - | - | - |

○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102,28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3백만원(100.4%)이 초과 수납되었음.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익은 다소 줄었으나, 도시주차장 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은 초과 수납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 구 분 | 수 납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합 계 | 102,287,738,096 | 102,287,738,096 | - |
| 공기업특별회계 | 96,296,841,391 | 96,296,841,391 | - |
| 기타특별회계 | 5,990,896,705 | 5,990,896,705 | - |

특별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합 계 | 100,975 | 101,905 | 14,096 | 4,024 | 83,785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97,519 | 98,351 | 11,382 | 3,945 | 83,024 |
| 상 수 도 | 14,919 | 15,155 | 6,269 | 1,647 | 7,239 |
| 하 수 도 | 11,729 | 12,318 | 4,735 | 2,290 | 5,292 |
| 지 식 정 보 타 운 | 70,871 | 70,878 | 377 | 8 | 70,493 |
| 기 타 특 별 회 계 | 3,456 | 3,554 | 2,714 | 79 | 761 |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467 | 467 | 63 | - | 404 |
| 의 료 급 여 기 금 | 353 | 353 | 344 | - | 8 |
| 도 시 주 차 장 | 2,636 | 2,734 | 2,306 | 79 | 349 |

○ 세출결산 개요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01,905백만원이고 지출은 예산현액의 13.8%인 14,09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02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83,785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 구 분 | 지 출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합 계 | 14,095,596,970 | 14,095,596,970 | - |
| 공기업특별회계 | 11,381,801,420 | 11,381,801,420 | - |
| 기타특별회계 | 2,713,795,550 | 2,713,795,550 | - |

특별회계 세출결산상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음.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일반회계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 |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계속비 |
|---------|------------------------|----------|----------|----------|--------|
| 부 서 명 | 세 부 사 업 | 통 계 목 | | | |
| 합 계 | | | 24,884 | 5,364 | 13,512 |
| 의회사무과 | 의회 청사 관리 | 전산개발비 | 9 | - | - |
| 기획감사담당관 | 정부합동평가 추진(도비) | 포상금 | 25 | - | - |
| 기획감사담당관 | 시정홍보 | 사무관리비 | 90 | - | - |
|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국비) | 포상금 | 8 | - | - |
| 복지정책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국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 | - | - |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도비) | 시설비 | 432 | - | - |
| 사회복지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사무관리비 | 4 | - | - |
| 사회복지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민간위탁금 | 150 | - | - |
| 사회복지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 550 | - | - |
|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지원 | 민간위탁금 | 150 | - | - |
| 사회복지과 | 시립요양원 건립 | 시설비 | 22 | - | 1,350 |
| 교육청소년과 | 교육기반마련 | 연구용역비 | 15 | - | - |
| 문화체육과 | 지방문화원육성지원 | 시설비 | 166 | - | - |
| 문화체육과 | 지역문화 진흥 | 연구용역비 | 50 | - | - |
| 문화체육과 | 관광홍보 | 시설비 | 22 | - | - |
| 문화체육과 | 직장운동부지원 | 시설비 | 400 | 1,228 | - |
| 문화체육과 | 직장운동부지원 | 감리비 | 25 | - | - |
|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 조성 | 시설비 | 1,962 | 68 | - |
|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 조성 | 감리비 | 36 | - | - |
| 정보통신과 |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 | 전산개발비 | 30 | - | - |
| 회계과 | 공용주택 관리 | 시설비 | - | 1,259 | - |
| 회계과 | 공용주택 관리 | 행사운영비 | - | 32 | - |

| 예산과목 | |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계속비 |
|-------|------------------------------|---------------------|----------|----------|-------|
| 부서명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회계과 | 공공시설물 | 시설비 | - | 783 | - |
| 안전총괄과 | 재난재해예방 | 연구용역비 | 397 | - | - |
| 안전총괄과 | 재난재해예방 | 시설비 | 550 | - | - |
| 안전총괄과 | 안전도시사업 | 사무관리비 | 49 | - | - |
| 안전총괄과 | 안전도시사업 | 행사운영비 | 22 | - | - |
| 안전총괄과 | 안전도시사업 | 외빈초청여비 | 10 | - | - |
| 안전총괄과 | 안전도시사업 | 기타보상금 | 1 | - | - |
| 안전총괄과 | 지방하천 개수사업(도비) | 시설비 | - | - | 2,075 |
| 안전총괄과 | 소하천 정비사업(지특) | 시설비 | - | - | 707 |
| 안전총괄과 | 소하천 정비사업 | 시설비 | - | 61 | 2,100 |
| 도시사업과 |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 | - | 4,160 |
| 도시사업과 |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 시설비 | 20 | - | - |
| 도시사업과 |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 | - | 3,120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 운영 | 연구용역비 | 50 | 305 | - |
| 건설과 | 도로시설물 정비 | 시설비 | 1,688 | 19 | - |
| 건설과 | 도로시설물 정비(특조) | 시설비 | 750 | - | - |
| 건설과 | 미불용지 관리 | 시설비 | 435 | - | - |
| 건설과 | 노후 노면 정비 | 시설비 | 1,000 | - | - |
| 건설과 | 기반시설(도로) 정비 | 시설비 | 6,201 | - | - |
| 건설과 | 강남순환고속화도로 | 시설비 | - | 18 | - |
| 건설과 | GB내 주민지원사업(지특) | 시설비 | 195 | 762 | - |
| 건설과 | 전기시설 관리 | 시설비 | 900 | - | - |
| 건설과 | 전기시설 관리 | 감리비 | 60 | - | - |
| 건축과 |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비) | 시설비 | 500 | - | - |
| 교통과 | 대중교통은행지원 | 연구용역비 | - | 53 | - |
| 교통과 | 특별교통수단(도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86 | - | - |

| 예산과목 | |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계속비 |
|---------|-------------------------------------|---------------------|----------|----------|-----|
| 부서명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교통과 |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 시설비 | 110 | - | - |
| 교통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연구용역비 | 63 | - | - |
| 교통과 | 주차장 확충 | 시설비 | 3,520 | 120 | - |
| 환경위생과 | 도시환경미화 | 연구용역비 | 20 | - | - |
| 환경위생과 | 도시환경미화 | 자산및물품취득비 | 24 | - | - |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원 지원 | 시설비 | 50 | - | - |
| 환경위생과 | 2018년 소형 도로분진 노면 청소차 운행 시범사업(도비) | 사무관리비 | 36 | - | - |
| 환경위생과 | 폐기물시설운영 | 연구용역비 | 22 | - | - |
| 환경위생과 |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도비) | 사무관리비 | 5 | - | - |
| 환경위생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국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2 | - | - |
| 산업경제과 | 공원시설물 보강 | 시설비 | 484 | - | - |
| 산업경제과 | 공원시설물 보강(도비) | 시설비 | 720 | - | - |
| 산업경제과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국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2 | - | - |
| 산업경제과 | 지역경제활성화 | 민간위탁금 | 72 | - | - |
| 산업경제과 | 지역경제활성화 | 시설비 | - | 36 | - |
| 산업경제과 |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도비) | 민간위탁금 | - | 171 | - |
| 산업경제과 |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비) | 연구용역비 | 70 | - | - |
| 산업경제과 | 과천시민회관 노후 보일러 교체 (국비)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490 | | |
| 산업경제과 | 생태길 조성 | 시설비 | 1,280 | | |
| 산업경제과 | 생태길 조성 | 감리비 | 20 | | |
| 산업경제과 | 지능정보도시 조성 | 시설비 | 28 | | |
| 보건소 | 주민건강증진 | 사무관리비 | 15 | | |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국비) | 시설비 | 441 | | |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국비) | 감리비 | 9 | | |
| 정보과학도서관 | 도서관 관리 | 시설비 | 270 | | |
| 환경사업소 |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지원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500 | | |

특별회계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 |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계속비 |
|---------------|---------------------|-------|----------|----------|-----|
| 회 계 명 | 세 부 사 업 | 통 계 목 | | | |
| 합 계 | | | 4,006 | 18 | - |
| 도 시 주 차 장 사 업 |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 | 전산개발비 | 79 | - | - |
| 상 수 도 사 업 | 결산감사수수료 | 사무관리비 | - | 10 | - |
| 상 수 도 사 업 | 불량관로관 세관공사 | 시 설 비 | 249 | - | - |
| 상 수 도 사 업 | 과천정수장 정비 | 시 설 비 | 388 | - | - |
| 상 수 도 사 업 | 노후상수관로 정비 | 시 설 비 | 1,000 | - | - |
| 하 수 도 사 업 |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구간1차) | 시 설 비 | 1,972 | - | - |
| 하 수 도 사 업 | 하수처리 현장제어시스템 교체 | 시 설 비 | 195 | - | - |
| 하 수 도 사 업 | 수질TMS용 TN,TP(대체) | 자산취득비 | 100 | - | - |
| 하 수 도 사 업 | 고도처리공법(데니포)시설운용 용역 | 연구용역비 | 23 | - | - |
|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 결산감사수수료 | 사무관리비 | - | 8 | - |

3. 기금의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
| | | 증가 또는 감소액 | 조성액 | 사용액 | |
| 계 | 91,104 | 802 | 2,348 | 1,546 | 91,906 |
| 통합관리기금 | 75,506 | 335 | 1,387 | 1,052 | 75,841 |
| 공공부조기금 | 3,122 | △21 | 46 | 66 | 3,101 |
| 사회복지기금 | 11,014 | △10 | 151 | 161 | 11,004 |
| 양성평등기금 | 3,108 | △50 | 42 | 92 | 3,059 |
| 교육발전기금 | 25,766 | △283 | 367 | 650 | 25,483 |
| 과천축제육성기금 | 15,048 | △14 | 206 | 220 | 15,033 |
| 체육진흥기금 | 2,127 | △27 | 29 | 56 | 2,100 |
| 재난관리기금 | 2,462 | △47 | 53 | 100 | 2,415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4,780 | 917 | 1,064 | 146 | 5,698 |
| 옥외광고정비기금 | 118 | 6 | 53 | 47 | 124 |
| 지역발전기금 | 16,506 | 231 | 231 | - | 16,737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7,043 | 96 | 96 | - | 7,140 |
| 식품진흥기금 | 9 | 2 | 9 | 7 | 12 |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결산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 미포함

2018년도 말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개, 법정관리기금 5개, 자체기금 7개로 총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개의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고 있음.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들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91,90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2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수입원임. 본년도 기금 사용액은 1,546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과천시의회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8 | 2017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1,970,614 | 1,883,694 | 86,920 | 4.61 |
| I. 유 동 자 산 | 394,919 | 308,210 | 86,709 | 28.13 |
| II. 투 자 자 산 | 5,015 | 4,182 | 833 | 19.92 |
| III. 일 반 유 형 자 산 | 164,188 | 166,421 | (2,233) | (1.34) |
| IV. 주 민 편 의 시 설 | 535,355 | 538,817 | (3,462) | (0.64) |
| V. 사 회 기 반 시 설 | 864,771 | 861,345 | 3,426 | 0.40 |
| VI 기타비유동자산 | 6,366 | 4,719 | 1,647 | 34.90 |
| 부 채 | 82,142 | 9,938 | 72,204 | 726.54 |
| I. 유 동 부 채 | 74,260 | 2,719 | 71,541 | 2,631.15 |
|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 -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 7,882 | 7,219 | 663 | 9.18 |
| 순 자 산 | 1,888,472 | 1,873,756 | 14,716 | 0.79 |
| I. 고 정 순 자 산 | 1,568,496 | 1,570,031 | (1,535) | (0.10) |
| II. 특 정 순 자 산 | 94,517 | 93,291 | 1,226 | 1.31 |
| III. 일 반 순 자 산 | 225,459 | 210,434 | 15,025 | 7.14 |

2018회계연도 말 과천시의회 자산은 1조 9706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8,836억원보다 869억원(4.61%)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2018회계연도 말 과천시의회 부채는 821억원으로 전년도의 99억원보다 722억원 (726.54%)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8 | 2017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I. 사업순원가 (가 - 나) | 104,129 | 128,898 | (24,769) | (19.22) |
| 가. 사업총원가 | 159,583 | 152,295 | 7,288 | 4.79 |
| 나. 사업수익 | 55,454 | 23,397 | 32,057 | 137.01 |
| II. 관리운영비 | 51,425 | 45,744 | 5,681 | 12.42 |
| III. 비배분비용 | 13,688 | 8,904 | 4,784 | 53.73 |
| IV. 비배분수익 | 13,812 | 18,283 | (4,471) | (24.45)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155,430 | 165,262 | (9,832) | (5.95) |
| VI. 일반수익 | 166,931 | 236,038 | (69,107) | (29.28)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11,500) | (70,776) | 59,276 | (83.75) |

과천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595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54억원을 차감한 1,041억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정책사업은 '시정지원'(128억원)과 '청소관리'(89억원)임.

또한, 2018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95억원과 경비 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13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93억원, 기타수익 4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8회계연도 과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15억원으로 전년도의 (-)707억원보다 59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56억원, 47억원 증가하고, 일반수익과 비배분수익이 각각 691억원, 4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5. 성과보고서

과천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 전략목표(21개) - 정책사업목표(48개) - 지표수(8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 부서명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 | |
|---------|-----------|--------|--------|------------------|-----|--------------------|
| | | 개수 | 지표수(A) | 초과달성, 달성 수(B) | 미달성 | 달성률 (C)=(B)/(A) |
| 계 | 21 | 48 | 82 | 60 | 22 | 73% |
| 의회사무과 | 1 | 1 | 2 | 1 | 1 | 50% |
| 기획감사담당관 | 1 | 1 | 3 | 1 | 2 | 33% |
| 총무과 | 1 | 2 | 4 | 3 | 1 | 75% |
| 복지정책과 | 1 | 4 | 6 | 6 | 0 | 100% |
| 사회복지과 | 1 | 5 | 8 | 6 | 2 | 75% |
| 열린민원과 | 1 | 2 | 2 | 1 | 1 | 50% |
| 교육청소년과 | 1 | 2 | 5 | 4 | 1 | 80% |
| 문화체육과 | 1 | 5 | 5 | 3 | 2 | 60% |
| 정보통신과 | 1 | 1 | 3 | 2 | 1 | 67% |
| 세무과 | 1 | 1 | 3 | 2 | 1 | 67% |
| 회계과 | 1 | 2 | 6 | 5 | 1 | 83% |
| 안전총괄과 | 1 | 2 | 5 | 5 | 0 | 100% |
| 도시사업과 | 1 | 1 | 1 | 1 | 0 | 100% |
| 도시정책과 | 1 | 2 | 4 | 3 | 1 | 75% |
| 건설과 | 1 | 1 | 3 | 3 | 0 | 100% |
| 건축과 | 1 | 2 | 3 | 2 | 1 | 67% |
| 교통과 | 1 | 1 | 3 | 2 | 1 | 67% |
| 환경위생과 | 1 | 5 | 6 | 2 | 4 | 33% |
| 산업경제과 | 1 | 6 | 7 | 7 | 0 | 100% |
| 보건소 | 1 | 1 | 1 | 0 | 1 | 0% |
| 정보과학도서관 | 1 | 1 | 2 | 1 | 1 | 50%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합 계 | | 4,619 | 1,071 | 634 | 5,057 |
| 일 반 회 계 | | 4,250 | 978 | 480 | 4,749 |
| 특 별 회 계 | | 369 | 93 | 154 | 308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상 수 도 | - | - | - | - |
| | 하 수 도 | - | - | - | - |
| | 지 식 정 보 타 운 | - | - | - |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369 | 93 | 154 | 308 |
| | 저 소 득 | 369 | 93 | 154 | 308 |
| | 의 료 보 호 | - | - | - | - |
| | 도 시 주 차 장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통 합 관 리 기 금 | - | - | - | - |
| | 공 공 부 조 기 금 | - | - | -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 -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 - | - | |
|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 - | - | - | - | |
| 지 역 발 전 기 금 | - | - | - | - | |
| 사 회 복 지 기 금 | - | - | - | - | |
| 양 성 평 등 기 금 | - | - | - | - | |
| 교 육 발 전 기 금 | - | - | - | - | |
| 과 천 축 제 육 성 기 금 | - | - | - | - | |
| 체 육 진 흥 기 금 | - | - | - |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 - | - |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5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749백만원, 특별회계 308백만원임.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증 | 감 | |
| 합 계 | | 1,252,729 | 15,918 | 5,783 | 1,262,864 |
| 행정 자산 | 소 계 | 1,247,476 | 15,862 | 5,763 | 1,257,575 |
| | 공 용 재 산 | 181,476 | 3,581 | - | 185,057 |
| | 공 공 용 재 산 | 1,026,399 | 12,281 | 5,763 | 1,032,917 |
| | 기 업 용 재 산 | 39,395 | - | - | 39,395 |
| | 보 존 재 산 | 206 | - | - | 206 |
| 일 반 재 산 | | 5,253 | 56 | 20 | 5,289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0,135백만원이 증가한 1,262,864백만원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토지매입 등이며, 감소내용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및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보상 등 임.

(4) 물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취 득 | 처 분 | |
| 수 량 | 697 | 80 | 22 | 755 |
| 금 액 | 7,716 | 992 | 107 | 8,601 |

물품 결산액은 신규취득 992백만원과 매각·폐기 10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5백만원 증가한 8,601백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확인됨.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1.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

정보통신과 세부사업 『전산장비관리』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은 총 477,006천원이며 이 중 425,726천원은 『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으로 통합발주 되었으며, 최종 348,411천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각 별도로 부기명과 금액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이를 통합발주 하고 있어 예산서 내용과 금액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통합발주할 사항은 예산편성 시 하나의 사업(부기)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 미수납액의 체계적인 관리

세입 전체내역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회계는 대부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도시주차장특별회계이며 매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채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4,896백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3,616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934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과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관리의 특성상 당해연도 발생액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진행되나 지난연도 이월액은 연도별로 회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회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19년 채납관리TF팀 발족으로 해당 금액이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도시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폐차 시에만 회수될 가능성이 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 관리부서(세무과, 교통과)의 체계적인 관리(채권 연령분석을 통한 관리 등) 및 불납결손액 활용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실질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건

○ 부서 성과지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제시

건설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매년 100%이며, 이는 先 목표, 後 실적이 아닌, 실적이 목표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하여 달성율이 10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실적으로 나와야 할 성과지표 설정의 근거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타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의 달성목표가 명확히 표시되어 이에 대한 달성도 또한 0% ~ 300%까지 다양하게 나왔으나 건설과의 경우에는 실적에 관계없이 항상 100%가 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팀에서도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각 부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부서 성과지표의 통일성 있는 측정산식 권고

산업경제과의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과지표 | 측 정 산 식 |
|----------------------|---|
| 고사목발생 감소율 | $(\text{전년도 고사목수} - \text{금년도 고사목수}) / \text{금년도 고사목수} * 100$ |
| 우량종자지원 증가율 | $(\text{금년도 종자지원량} - \text{전년도 종자지원량}) / \text{금년도 종자지원량} * 100$ |
| 가축방역예방 증가율 | $(\text{금년도 가축질병 발생량} - \text{전년도 가축질병 발생량}) / \text{금년도 가축질병 발생량} * 100$ |
| 창업상당지원 증가율 | $(\text{금년도 창업상당지원수} - \text{전년도 창업상당지원수}) / \text{전년도 창업상당지원수} * 100$ |
| 보조금 지급율 | $(\text{금년도 보조금 지급건수} - \text{전년도 보조금 지급건수}) / \text{금년도 보조금 지급건수} * 100$ |
| 병충해 및 시설물관련 민원발생 감소율 | $(\text{전년도 민원발생건수} - \text{금년도 민원발생건수}) / \text{금년도 민원발생건수} * 100$ |

산업경제과의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을 보면, 어떤 지표에는 분모를 금년도 해당 사업량을, 또 다른 지표에는 전년도 해당 사업량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실적과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통일성도 없으며 계산 값 또한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감소율이나 증가율로 나타내고 있는데 분모의 값은 전년도 또는 금년도 중 하나의 값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수학적으로 정확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금년도 값이 아닌 전년도 값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예산편성된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미집행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뉘는 등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과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담금, 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634,24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기금 소관부서 책임하에 집행 되어야 함에도 미집행 되어 634,234천원 전액이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지출하지 않아 전출금 예산 전액이 미집행됨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국비)』의 집행잔액 ‘-’ 발생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국비)』 사업 예산액은 3,981천원, 보조금 수령액은 3,892천원, 집행액은 3,981천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 89천원으로 결산이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편성된 예산 뿐 아니라 보조금 수령액도 확인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수령액이 당초 예산액 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량을 조정하거나 시비로 국도비의 부족분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국도비 수령액에 따라 집행잔액이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과천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결산상 잉여금 | 이월액 | 보 조 금 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 | 예산현액 대 비율 |
|------|---------|---------|--------|------------|---------|-----------|
| 2018 | 442,001 | 234,101 | 47,784 | 2,890 | 183,427 | 41.5% |
| 2017 | 340,134 | 148,961 | 30,693 | 1,063 | 117,205 | 34.5% |
| 2016 | 301,334 | 77,755 | 19,037 | 1,340 | 57,378 | 19.0% |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6,222백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 비율은 41.5%로써 직전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현액 대 비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 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7.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 반영

2018회계연도의 이월사업비는 47,784백만원으로 직전년도 30,693백만원에 비해 17,091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예산현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의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433백만원,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운영』 704백만 원과 문화체육과의 직장운동부 및 학교운동부 건립사업 등 2,445백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 충분한 사전검토,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같은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요구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월사업 요청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보조금 정산 및 관리 철저

시에서는 생활체육 육성·프로그램 운영, 각종 대회 참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을 시 체육회를 통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는 시장기배 대회 중 일부 개최 하지 못해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기타 산하협회에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내용 또는 소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거나 보조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정산 서류를 보면, 탁구 대회는 집행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누락, 골프 대회는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상배(賞杯)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지출의 경우 영수증 또는 현금집행확인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진행 업체와의 계약도 비교견적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 시 회계처리 요령을 준수하시고 기준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9. 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체) 시 검토 철저

예산의 변경사용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써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정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이체 등 예산변경 건수를 보면 총 42건(전용 38건, 이체 4건)으로 전년 대비 3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변경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변경 사용의 큰 폭의 증가는 당초 의회 예산심의의 의미를 훼손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변경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10. 규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 권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클린카드 사용 업종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인수위 활동 관련 간담회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나눔가게 기부 릴레이 업무협약식 관련 관계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규정에 맞는 집행을 권고합니다.

4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세입금 과오납반환액 구분 관리 : 세무과

전년도 세입금 과오납반환액 구분 관리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경기도 회계과-19590(2017.6.1)에 의거 『2017 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의견으로 반영되어 사유별 종류가 4종에서 7종으로 변경되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오납환급액의 34.6%(1,182,268천원)을 차지하는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반환액이 기타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은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타항목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스템 개정을 요청하여 사유별 종류를 추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시스템 운영의 개선 의견을 경기도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미처리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2. 예산편성 후 미집행 : 세무과

세무과 예산편성 된 세외수입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예산현액은 4,565천원인데 이 금액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세외수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그 지출액은 집행 잔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등 1,700여건을 발송하였으나 지출 과목 착오로 인하여 「세외수입총괄관리/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지방세 부과/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비용 1,434,200원을 「세외수입 총괄관리/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지출 항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예산책정의 체계화 : 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결산 검사 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사업비는 대부분 경상적인 비용이며 지출내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2차 추경의 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가 1,079백만원(전년도 815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지원예산액 전체를 비교하여도 집행잔액 1,124백만원(전년도 1,04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의 비율이 2%미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8년도 3회 추경에 예측 가능한 불용액에 대한 감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792백만원(비율 3.45%)으로 줄였으며,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민간위탁기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 사회복지과, 교통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센터장에게 급여 성격의 수당을 인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사용과 월정액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비롯한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은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에게 수탁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센터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편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과천시는 수탁기관이 정확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현재 센터는 관리주체가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센터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 2018년 1월부터 센터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적정한 인건비를(급여 및 제수당 등) 집행하고 있으며, 2018.12.24.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고, 2019.2.7. 센터에서 제출한 운영규정을 2019.2.8.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관리주체를 교통과로 일원화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5.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가정 지원 39,000천원 불용처리 :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가정 지원 예산 39,000천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 청소년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이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과천시가 신설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동의' 결정된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당초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시 지원 대상을 교육급여 지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 50% 이하'로 명시하였으나, 지급 적용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3조 제3항의 2에 규정된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 '다문화·한부모·조부모·소년소녀 가정' 까지 기준을 강화해 중복 제한함으로써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비 지급은 현금지원으로 경제적 소득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 제3항의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은 우선 지원 가능한 조항일 뿐 그 외 대상에 대한 배제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는 2017년 12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등이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수혜대상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7년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2018년 2월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변경 협의를 통하여 지원기준을 경제적 소득 기준(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지출부의 표기내용 개선 : 회계과

지출부의 기록사항 중 거래처명에 대한 내용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업무추진비 포함) 거래처명을 카드회사명으로 기록해 실제 거래업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업체는 최종 채주명으로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전 부서의 일관된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출품의등록 전산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도 병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2018. 11. 9. '지출품의등록 전산시스템' 관련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실 거래업체를 최종 채주명으로 기록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당해 연도 정산 처리 : 도시사업과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은 연도폐쇄기 도래 전(12월말)까지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015년, 2016년 사업기간의 정산과 반납이 2017년도에 이루어져 2017년 기타영업외수익이 120,397,990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고 그 금액만큼 2015년, 2016년의 순세계 잉여금이 과소 계상되어 결산과 회계처리가 모두 3년도에 걸쳐 부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2018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협약에 의거 사업종료 후 연도폐쇄기 도래 전(12월 말)에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정산 처리하겠으나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도 간 걸쳐있는 경우는 사업종료 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④사업비 정산은 당해연도 사업 완료 후 익년도 1월 이내와 사업준공시 45일 이내 기준으로 실시하기로 함

8. 세부사업 분류조정 : 건축과

건축과 예산편성에 있어 건축물관리(단위)의 세부사업인 건축물 단속의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72,500천원 중 실제 건축물 단속관련 비용예산은 400천원뿐이며 대부분 운영수당,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분류를 하는 목적은 성격에 따라 대표적인 비용단위로 구분하기 위함이며 결산은 실제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별도 구분함에 따른 실익이 없다면 세부사업명을 건축물관리로 하는 것이 좀 더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명을 '건축물 운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9.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 : 건축과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산업경제과(공원 소재 놀이터)와 건축과(공원이외 놀이터)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과 관리 놀이터는 총 10개소이며 이 중 음수대가 있는 놀이터는 1개소입니다. 해당 음수대는 지난 1월에 수도꼭지 고장으로 1년간 방치되다 11월에야 수리되었으며 동절기인 관계로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집행에 따른 후순위로 책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나 이를 발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예산이 1,308천원이 남았고 음수대 수리비용이 440천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우선순위를 따질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중 음수대가 있는 놀이터는 1곳 뿐이므로 음수대관련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에 어린이놀이터를 현재와 같이 관리주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면 좀 더 유연한 예산의 집행으로 시설의 이용목적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수대가 있는 문원청계길 어린이놀이터는 2018년부터 산업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도 담당 놀이터에 대하여 시기에 맞도록 유연하고 적절하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적절한 집행 : 환경위생과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과천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 용역'은 진행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용역의 타당성입니다. 상기 용역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한 심의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위원회 심의과정이 생략된 채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공식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의 목적인 과천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과천시는 이 민원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하고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정책적 판단을 끝낸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용역예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편성·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용역 결과의 품질 평가와 감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6년 과천시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환경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보호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산업경제과-11031,2016.2.26.)

그러나 과천시는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호구역 지정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기존 보호구역이 부적절하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준공계를 수용했습니다.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용역이후 진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천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대체후보지를 결정하고 그 토지 관리자인 서울대학교에 협의요청(환경위생과-32167)한 결과 대체후보지 승낙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자산운영과 2523, 2017.11.10) 과천시는 이후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람공고 실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공고문 게시 협조 공문 발송, 환경부장관 대상 재지정에 관한 협의요청을 시도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해서는 동일 면적 이상의 대체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재지정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으니 사업 중단을 권고합니다.

⇒ ‘과천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 용역’은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거, 현장기초조사 등은 야생생물 관련 학술단체 또는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과천시 정책연구용역」의 심의대상에서 제외 요청(환경위생과-14340,2017.5.8.)하게 되었으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환경위생과-6823, 2018. 6.15.)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11. 이월 사업의 미집행 : 산업경제과

녹지조경 중 공원시설물 보강 사업관련 시설비는 지출되었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반면 감리비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감리비는 시설공사 관련 필수 비용이므로 지출되거나 이월 될 뿐 전체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되었습니다.

⇒ 중앙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건축 감리용역 예산인 감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시설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잘못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출 시 면밀히 검토 후 해당 통계목을 확인하여 집행하겠습니다.

12.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계약 방식의 개선 : 보건소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나,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2항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공개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2014년 12월 최초 체결된 계약으로, 2014.11.24 모집공고 결과 기존 근무자를 포함해 2명이 응시해 새로운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 채용되었고 이후 3년째 계약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대행업무의 범위나 대행자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 「지방계약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계약 방법을 규정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약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공개모집은 기본입니다.

둘째, 면접 내용 및 평정 요소가 면접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표들로서 합리적,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모집 절차 없이 계약연장 가능한 조건도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도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비합리적 평가지표, 공개모집의 원천적 차단, 영구적 재계약이 가능한 현 조례 시행규칙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4조 제2항의 계약기간과 절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20223(2018.11.1.) 및 보건소-21303(2018.11.16.)와 관련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공개모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주관적 평가지표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부 면접관을 채용하여 면접 시 객관성을 부여하였습니다.